

제5기 배곧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학교운영위원회

## 제5회 임시회 회의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시: 2023년 12월 7일(목) 15:00~16:00</li> <li>○ 장소: 본교 1층 학운위실</li> </ul>	교장	위원장

- 회순  
 1. 개회    2. 국민의례    3. 학교장 인사    4. 위원장 개의 선언    5. 안건심의    6. 폐회

- 심의 안건 (총45건)

심의 번호	심의 안건	담당자
1	2023학년도 배곧누리초등학교 회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백OO
2	2023학년도 배곧누리초등학교 민원 면담실 조성계획 심의(안)	권OO
3	배곧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안)	이OO
4	2023학년도 겨울방학(유) 중 유치원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계획(안)	이OO
5	2023학년도 2학기 불법찬조금 예방교육 및 청렴관련 연수	이OO

<p>개회선포 및 국민의례</p>	<p>▶간사: 안녕하세요. 제5기 5회 배곧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통합운영위원회 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국기를 향해 주세요.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장선생님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p>																																																																				
<p>학교장 인사</p>	<p>▶학교장: 안녕하세요.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운데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학교는 교육과정, 성적, 인사 등등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1년동안 별 탈 없이 잘 지내온 것이 운영위원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p>																																																																				
<p>안건명</p>	<p>발언요지,결정사항</p>	<p>심의결과</p>																																																																			
<p>&lt;안건1&gt; 2023학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안) &lt;발의 백O경&gt;</p>	<p>▶위원장: 이번 안건은 2023학년도 배곧누리초등학교 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백O경 행정실장님이 설명하겠습니다.</p> <p>▶백O경: 2023학년도 제4회 추경예산 제안 이유는 2023학년도 신규 지정된 목적사업비 및 보조금을 학교회계에 편성하고,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학교회계의 집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단위 :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 colspan="3">세 입 예 산</th> <th colspan="3">세 출 예 산</th> <th rowspan="2">과부족액</th> </tr> <tr> <th>경정예산액</th> <th>기정예산액</th> <th>비교증감</th> <th>경정예산액</th> <th>기정예산액</th> <th>비교증감</th> </tr> </thead> <tbody> <tr> <td>추경예산</td> <td style="text-align: right;">2,235,377</td> <td style="text-align: right;">2,194,793</td> <td style="text-align: right;">40,584</td> <td style="text-align: right;">2,235,377</td> <td style="text-align: right;">2,194,793</td> <td style="text-align: right;">40,584</td> <td></td> </tr> </tbody> </table> <p>○ 세입·세출내역 - 세입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구 분</th> <th>금 액</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254,562</td> <td style="text-align: right;">11.4</td> </tr> <tr> <td>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1,659,859</td> <td style="text-align: right;">74.3</td> </tr> <tr> <td>학부모부담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295,170</td> <td style="text-align: right;">13.2</td> </tr> <tr> <td>행정활동수입</td> <td style="text-align: right;">18,024</td> <td style="text-align: right;">0.8</td> </tr> <tr> <td>전년도이월금</td> <td style="text-align: right;">7,762</td> <td style="text-align: right;">0.3</td> </tr> <tr> <td><b>세 입 합 계</b></td> <td style="text-align: right;"><b>2,235,377</b></td> <td style="text-align: right;"><b>100</b></td> </tr> </tbody> </table> <p>- 세출 (단위:천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정책사업</th> <th>금 액</th> <th>구성비</th> </tr> </thead> <tbody> <tr> <td>인적자원 운용</td> <td style="text-align: right;">87,238</td> <td style="text-align: right;">3.9</td> </tr> <tr> <td>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td> <td style="text-align: right;">800,084</td> <td style="text-align: right;">35.8</td> </tr> <tr> <td>기본적 교육활동</td> <td style="text-align: right;">460,166</td> <td style="text-align: right;">20.6</td> </tr> <tr> <td>선택적 교육활동</td> <td style="text-align: right;">349,432</td> <td style="text-align: right;">15.6</td> </tr> <tr> <td>교육활동 지원</td> <td style="text-align: right;">134,541</td> <td style="text-align: right;">6</td> </tr> <tr> <td>학교 일반운영</td> <td style="text-align: right;">403,916</td> <td style="text-align: right;">18.1</td> </tr> <tr> <td><b>세 출 합 계</b></td> <td style="text-align: right;"><b>2,235,377</b></td> <td style="text-align: right;"><b>100</b></td> </tr> </tbody> </table> <p>○ 주요 내용 제4회 추가경정예산은 40,584원 증액으로 총 규모는 2,235,377원이며,</p> <p>세입 부분은 가. 교육경비 보조금 - 외국인유아학비 1건 △1,368원 나. 목적사업비전입금 - 누리과정지원(유아학비)외 5건 47,006원 다. 수익자부담경비 - 유치원졸업앨범비외 3건 △5,054원</p>	구 분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과부족액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추경예산	2,235,377	2,194,793	40,584	2,235,377	2,194,793	40,584		구 분	금 액	구성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4,562	11.4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1,659,859	74.3	학부모부담수입	295,170	13.2	행정활동수입	18,024	0.8	전년도이월금	7,762	0.3	<b>세 입 합 계</b>	<b>2,235,377</b>	<b>100</b>	정책사업	금 액	구성비	인적자원 운용	87,238	3.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800,084	35.8	기본적 교육활동	460,166	20.6	선택적 교육활동	349,432	15.6	교육활동 지원	134,541	6	학교 일반운영	403,916	18.1	<b>세 출 합 계</b>	<b>2,235,377</b>	<b>100</b>	<p>원안가결</p>
구 분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과부족액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경정예산액	기정예산액	비교증감																																																															
추경예산	2,235,377	2,194,793	40,584	2,235,377	2,194,793	40,584																																																															
구 분	금 액	구성비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254,562	11.4																																																																			
지방교육행정기관이전수입	1,659,859	74.3																																																																			
학부모부담수입	295,170	13.2																																																																			
행정활동수입	18,024	0.8																																																																			
전년도이월금	7,762	0.3																																																																			
<b>세 입 합 계</b>	<b>2,235,377</b>	<b>100</b>																																																																			
정책사업	금 액	구성비																																																																			
인적자원 운용	87,238	3.9																																																																			
학생복지/교육격차 해소	800,084	35.8																																																																			
기본적 교육활동	460,166	20.6																																																																			
선택적 교육활동	349,432	15.6																																																																			
교육활동 지원	134,541	6																																																																			
학교 일반운영	403,916	18.1																																																																			
<b>세 출 합 계</b>	<b>2,235,377</b>	<b>100</b>																																																																			

	<p>세출 부분은 목적사업비는 성립전으로 해당 사업에 편성하여 진행중이며, 각 부서별 종료된 사업의 예산을 재편성하여 미래형교육과정강사비, 과학교구구입비, 계단환경개선공사비, 시설물수선비, 비품구입 등 조정편성하였습니다.</p> <p>▶백O경: 이상입니다.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해당 안건에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모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상정된 2023년도 배곧누리초등학교 회계 제4차추가경정예산(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t;의사봉 3타&gt;</p>	
<p>&lt;안건2&gt; 2023학년도 민원 면담실 조성계획 심의(안) &lt;발의 권O경&gt;</p>	<p>▶위원장: 다음 안건으로 2023학년도 민원 상담실 조성계획 심의(안)을 권O진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겠습니다.</p> <p>▶권O경: 안녕하세요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이 민원을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하고 민원 창구 일원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본교는 1층에 위치한 위클래스가 교실과 비교적 층으로 분리되어 있고 비상시에도 옆에 보건실이 있어 빠른 처치가 가능하기에 민원 상담실과 겸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민원실 내부에는 교육부 교원정책과에서 시행하는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과 올해 9.1일자로 시행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CCTV설치 및 녹음전화기, 호출장치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p> <p>▶위원장: 해당 안건에 의견 있으신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장: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학교마다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애를 써주신덕에 신청하여 600만원 예산을 받아서 좋은 환경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학교폭력 뿐아니라 상담을 요청 할때도 공식적으로 여기서하나요? ▶권O경: 네 해당이 되는겁니다. 예약을 하지 않거나 민원 대응에 보호받지 못할 경우가 있을 때 민원 대응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다른 질문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모두: 없습니다. ▶위원장: 그럼 상정된 2023학년도 민원 상담실 조성계획 심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t;의사봉 3타&gt;</p>	<p>원안가결</p>
<p>&lt;안건3&gt; 배곧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개정 심의(안) &lt;발의 이O희&gt;</p>	<p>▶위원장: 다음 안건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규칙 개정 심의(안)을 이O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p> <p>▶이O희: 제안이유는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제정에 따른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규정 마련과 「유치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내용에 따라 학적 용어 통일을 위해 유치원 규칙 개정을 심의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배곧누리초등학교병설유치원규칙 제6장, 제8장, 제9장의 내용의 신설, 수정, 보완하고자 하며 제6장 입학, 재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입학, 휴학, 자퇴, 퇴학, 수료 및 졸업으로 변경하여 제15조(입학)부터 제19조(수료 및 졸업)까지 전면 내용 수정 및 용어 추가, 보완, 통합하고자 합니다.</p> <p>내용을 살펴봐주시기 바라며 제 8장 교직원 관리 규정을 삭제하며 제9장 규칙개정절차가 제8장 규칙개정절차로 변경, 제9장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보호 부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에 따라 신설하며 제27조 적용, 제28조 생활지도의 범위, 제29조 분리보관 가능물품, 제30조 기타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규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p> <p>▶위원장: 해당 안건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위원장: 병설유치원의 경우 규칙 내용이 공통으로 정해져 있나요?</p>	<p>원안가결</p>

	<p>▶이O희: 기준안이 마련되어있고 각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서 규칙내용 들을 넣기도 합니다.</p> <p>▶위원장: 바꾼이유가 중간에 유아들을 받거나 아프거나 휴학 기간 등을 좋게 변경된 것 같기도 하구요</p> <p>▶이O희: 네 맞습니다. 수정보완 되면서 변경 되었습니다.</p> <p>▶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p> <p>▶학부모위원 : 아이들 중의 학원으로 인해 핸드폰을 가져가야 하는데 내년부터 아예 안되는건가요?</p> <p>▶이O희: 아닙니다. 안전내용을 보시면 핸드폰을 가져올 경우 분리보관을 할 수 있게 보관 기간, 장소등을 지정을 해놓고 가방안에 넣어 사물함 속에 넣어두었다가 하원할 때 가지고 갈 수 있게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p> <p>▶위원장: 다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p> <p>▶위원모두: 없습니다.</p> <p>▶위원장:그럼 배곧누리초등학교 병설유치원규칙 개정 심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p> <p>&lt;의사봉 3타&gt;</p>	
<p>&lt;안건4&gt;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유치원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계획 심의(안) &lt;발의 이O희&gt;</p>	<p>▶위원장: 다음 안건은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유치원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계획 심의(안)을 이O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p> <p>▶이O희: 제안이유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양육어려움의 감소 및 사회생활 참여기회 보장을 위하여 방학 중 종일반 운영을 위함이며 주요 내용으로 운영기간은 2023.12.28.(목)~2024.2.2.(금) 26일간이며 운영시간은 09:00~17:00입니다. 특수종일반 강사 1명과 특수교육지도사, 교육자원봉사자 2명이 지원을 하며 특수종일반 참여 유아 4명 모두 방학중 특수교육종일반에 참여합니다. 수익자부담금으로 급간식비가 있는데 급식비 156,000원 중 50,000원을 유아학비에서 지원 106,000원, 간식비는 26일 중 20일을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나머지 9000원을 학부모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부담금은 총 115,000원이 발생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p> <p>▶위원장: 안건에 질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p> <p>▶위원모두: 없습니다.</p> <p>▶위원장: 그럼 2023학년도 겨울방학 중 유치원 특수교육 종일반 운영계획 심의(안)을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lt;의사봉 3타&gt;</p>	<p>원안가결</p>
<p>&lt;5.연수&gt; 2023학년도 2학기 불법찬조금 예방 및 청렴관련 연수 &lt;이O옥&gt;</p>	<p>▶위원장: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2학기 불법찬조금 예방 및 청렴관련 연수가 있습니다.</p> <p>▶이O옥: 안녕하세요? 불법찬조금예방 및 청렴 관련 연수자 교감 이OO입니다. 학교운영위원장님들 대상으로 불법찬조금 예방 연수는 학기별 1회, 청렴관련 연수 1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먼저 불법찬조금예방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p> <p>교직원 및 학부모, 학교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를 돕고, 관행적인 불법찬조금 모금행위에 대한 사전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꼭 연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불법찬조금은 학부모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을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 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p> <p>불법찬조금의 주요 유형은 사례를 보시고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입니다. 본교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조성하고 있으며, 건전한 학교발전기금을 제외한 모든 것은 차단합니다. 또한 공무원행동강령에 의거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선물 등 절대 받지 않습니다.불법찬조금의 신고처는 경기도교육청 전자민원이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부정청탁 금지 및 청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직자, 공직자의 배우자, 각종위원회 위원, 부정 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에게는 청탁 금지법이 적용됩니다. 법을 위반하는 경우 교사와 학부모 해당자 모두에게 징역, 벌금, 과태료 등 형법적 벌칙 조항이 있으니 꼭 살펴봐 주십시오.</p> <p>공익제보자 보호 및 공익신고 보상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밀보장, 불이익조치금지, 책임의 감면,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으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고</p>	<p>교육실시</p>

	<p>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됩니다. 비밀보장 대상 및 벌칙사항도 살펴봐 주십시오.</p> <p>공무수행사인 대상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 이해충돌방지법이 적용됩니다. 사적이해관계의 신고 및 회피, 기피신청, 직무상 비밀 등의 이용 금지등의 내용이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p> <p>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지요?</p> <p>▶위원모두: 없습니다.</p> <p>▶이오욱: 이상으로 연수를 마치겠습니다.</p> <p>▶위원장: 그럼 이상으로 제5기 5회 배곧누리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통합위원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t;의사봉 3타&gt;</p>	
<p>참석인원 학운위 위원 10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부모위원: 송OO, 이OO, 이OO</li> <li>- 교원위원: 정OO, 이OO, 이OO, 박OO, 김OO</li> <li>- 지역위원: 김OO, 유OO</li> <li>- 간사: 김OO</li> </ul> <p>*구성인원: 학부모위원 5명, 지역위원 2명, 교원위원 5명 총12명 (학생위원 2명, 간사 1명)</p>	